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2

발의연월일: 2020. 8. 5.

발 의 자:배준영·김선교·박대수

이명수・김석기・金炳旭

이 용・김정재・정운천

배현진 • 유상범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공항으로서 사업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그리고 공항철도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공항 연계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당사자인 인천공항의 참여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항공운송산업 및 항공운송안전에 기반이 되는 항공정비산업, 항공종사사 등 우수 인력의 양성, 경제·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으로서 공항주변지역 개발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을 발굴해 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 공종사자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지원,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 2부터 제1호의5까지 및 제13조의2, 제13조의3 신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수"를 "보수와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 제2호, 제4호의"로 한다.

- 1의2.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및 같은 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1의3.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와 공항 운영 인력, 항공 관련 산업인력 등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 1의4. 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항만 등 공항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시설 개선 사업
- 1의5.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출자, 출연 등)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

를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운영수익금의 적립) 공사는 운영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적립하고 그 비율은 배당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제10조(사업) 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항공사업법」 제2조제1
	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항공
	기취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사업</u>
<u><신 설></u>	1의3. 「항공안전법」 제2조제1
	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와 공
	항 운영인력, 항공 관련 산업
	인력 등의 양성을 위한 교육
	<u>훈련사업</u>
<u><신 설></u>	1의4. 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
	도, 항만 등 공항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익 증진을 위하
	여 필요한 교통시설 개선 사
	<u>업</u>
<u><신 설></u>	1의5.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
	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
	<u>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u>
	<u>사업</u>

-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3. 4. (생략)
- 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 6. ~ 9. (생략)
- ② (생략)

<신 설>

<신 설>

- 2. ----------보수와 공항 주변지역 의 개발 사업
 - 3. 4. (현행과 같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 의5까지, 제2호, 제4호의----
 - 6. ~ 9.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출자, 출연 등)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 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공항 주변지역의 개 발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 제13조의3(운영수익금의 적립) 공 사는 운영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적 립하고 그 비율은 배당률로 한 다.